

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

[식품위생법 제72조]
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/유형 : 교베멤배끄리옥/ 곡류가공품

나. 유통기한 : 2023. 1. 7.

다. 회수사유 :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

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

마. 회수영업자 : 주식회사 인코트레이딩

바. 주소 :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로 57

사. 연락처 : 055-344-0119
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
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할기관 :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(☎ 051-602-6163)